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9. 12.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8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8월 31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1회 제1차정례회 제1차위원회 (2006. 9. 12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채 진 묵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보상심의회 위원인 의원 본인에 대한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제명을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함.
- 용어의 정의 중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변경함.(안 제2조제2호)
- 직무로 인한 의원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함.(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
-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이 본인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

경우에는 회의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제척 규정을 신설함.
(안 제13조제4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)에 관한 규정이 2006년 2월 8일 일부 개정되어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의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, 안 제13조제4항을 신설하여 보상심의회 위원이 본인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제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6. 8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보상심의회 위원인 의원 본인에 대한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중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변경함.(안 제2조제2호)
- 나. 직무로 인한 의원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함.(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
- 다.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이 본인과 관련된 안전을 심의할 경우에는 회의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제척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3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
- 나. 예산조치 : 기획예산과(예산팀), 협의완료

다. 합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.

마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06. 7. 13 ~ 8. 2) 결과 특이사항 없음.

(2)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6.8.28)

(3)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

(4) 신·구조문 대비표 1 부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「지방자치법」으로 하고, “동법시행령 제15조의 2”를 “동법 시행령 제15조의3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,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“일비”를 각각 “의정활동비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”를 “각 호와 같다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”를 “「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중 “각호의 1과 같다”를 “각 호와 같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.

“다만,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”

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심의회 위원중 의회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전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

부 칙

-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② (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.

[별첨 1]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 금지급에관한조례	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2조의2 및 <u>동법시행령</u> 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.....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..... <u>동법 시행령</u>제15조의3.....
제2조(정의) (생략) 1. (생략) 2. " <u>일비</u> "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<u>일비</u> 를 말한다. 3.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" <u>의정활동비</u> "라 함은 <u>의정활동비</u> 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①보상금의 지급대 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<u>한다.</u> 1.~4.(생략) ②제1항 각호의 "직무"에 대한 구체적인 인 정범위는 <u>국가에서 정하는 "공무상 재해 인정기준"에 준한다.</u>	제3조(보상금지급대상)①..... <u>각 호와 같다.</u> 1.~4.(현행과 같음) ②.....「 <u>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</u> 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 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연도 <u>일비</u> 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연도 <u>일비</u> 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.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①..... <u>각 호와 같다.</u> 1. <u>의정활동비</u> 2. <u>의정활동비</u>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보상금의 청구)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<u>각호의 1과 같다.</u> 1. ~2.(생략) ②(생략)	제6조(보상금의 청구)①..... <u>각 호와 같다.</u> 1. ~2.(생략) ②(현행과 같음)
제13조(심의회 회의)①~②(생략)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u>〈단서신설〉</u>	제13조(심의회 회의)①~②(현행과 같음) ③..... <u>다만,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
<u>〈신 설〉</u>	④ <u>심의회 위원중 의회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</u>